[별지 제49호의2 서식] 삭제 <2017. 10. 19.>

작성방법

1. ⑥란은 세관발행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일을 적습니다.
2. ⑦란 중 종류란에는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를 적고, 분류번호란에는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그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습니다.
3. ⑧란은 수출상품에 대한 관세・통계통합품목분류표(HSK No.: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)의 품목번호 10자리를 적습니다.
4. ⑫란 중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"자가"로, 위탁운반의 경우는 업소명을 적고, 운반종류란에는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 운반차량 종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습니다.
5. ⑬란 중 업소명란에는 수입국의 처리업체 명칭을 영문으로 적고, 처리방법란에는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 중 자가처리에 따른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.
6. 앞쪽란이 부족할 때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.